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 설치 〉

■ 유의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707호)

2024.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2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개정안의 발의배경 및 기금 신설 필요성 검토	6
가. 개정안의 발의 배경	6
나.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 신설 필요성	7
3. 주요 내용별 검토	12
가. 기금의 설치 근거 및 지원 대상	12
나. 기금의 재원	14
다. 기금의 용도 등	17
라. 보칙: 다른 법률의 적용 제외 및 특례	21
마. 부칙: 기금의 운용기간 등	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의동의원 등 101인
2. 제 안 일 : 2023. 12. 1.
3. 회 부 일 : 2023.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함)이 신설되어 총 40조 원이 조성되었으나 이후 2년간 지원 실적은 이 중 2% 정도(약 8천억 원)에 그침. 이처럼 지원 실적이 낮은 것은 7% 대의 고금리 대출 지원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금, 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성장성 있는 첨단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의 공격적 투자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첨단

전략산업 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되,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 지원 시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함)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이하 “전략산업지원기금”이라 함)을 설치함(안 제29조의7 신설).

나.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8 신설).

다.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금 대출 시 금리는 국채 이자율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9

신설).

라.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29조의10 신설).

마.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출자한 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0조).

바.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전략산업지원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41조).

사.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계 법령의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아.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이하 ‘전략산업지원기금’)을 신설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를 위해 개정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조성 재원 및 용도, 자금지원 절차 및 조건 등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29조의7부터 안 제29조의 10까지), 자금지원기업에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기금 자산의 처분 과정에 필요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전략산업지원기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장(章) 신설	• 제3장의3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
기금의 설치 (안 제29조의7)	• 목적: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
기금 지원 대상 (안 제29조의7)	• 다음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전략산업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등
기금의 재원 (안 제29조의8)	• 기금채권 발행자금 • 정부 및 한국은행 차입금 • 기간산업안정기금 전입금 등 • (안 제29조의4제2항) 기업산업안정기금 용도에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추가
기금관리·운용 (안 제29조의9)	• 관리·운용주체: 한국산업은행
	• 기금의 용도: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대출(국채율 이하 대출금리 적용 가능), 자산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의결권은 제한) 등 자금지원
	• 여유자금 운용: 국·공채 매입 등
	• 한국산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 회계처리
	•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 보유주식 처분시 해당 기업 주주 등에 우선매수권 부여
	• 자금지원시 조건 부과 가능
전략산업지원기금 운용심의회설치 (안 제29조의10)	• 심의사항: 기금 관리·운용 정책, 자금지원 등 • 구성: 7명 이내의 전문가(소관 상임위 추천 2명 포함)
특례조항 (안 제40조~제42조)	• 자금지원 기업에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배제 •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특권 인정 • 의결권배제·제한주식 발행한도 예외인정 •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 완화
시행일, 기금 운용 기간 (부칙)	• 공포한 날 • 2028년 12월 31일(약 5년)까지 기금 운용

2.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기금 신설 필요성 검토

가. 개정안의 발의 배경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의 첨단전략산업은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일차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첨단 기술력과 제조 능력은 국가안보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음.

○ 이러한 첨단전략산업은 기술혁신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장으로 빠른 기술혁신이 요구되며, 대규모 장치사업으로서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길어서 적기 투자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임.

□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2022.2.3.)을 제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12월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¹⁾²⁾.

1)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18809) 제안이유’

□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개정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다 확대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성장성 있는 첨단전략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의 공격적 투자 지원에 대한 대응으로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 신설 필요성

□ 다만, 개정안과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신설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산업은행 기금 신설을 통한 자금 지원은 재정지원사업이나 현행 정책금융 외의 지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는 바, 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지원 규모 등을 참고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반도체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산업의 핵심 부문으로서, 해당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님.

2022년 1월 국회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였고,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2022년 11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나, 관련 산업계 등에서는 경쟁국가들의 파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촉진,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지원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2) 당초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국회 차원의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어 그 활동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프로그램(900억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총 392억원),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61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3년 약 15조 6,470억원의 정책금융이 대출·투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되었고³⁾, 2024년에도 14조 6,6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지원될 예정임.

< 2024년 첨단전략산업 정책금융 공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합 계
2024년 계획	35,550	10,700	58,750	41,600	146,600

자료: 금융위원회

3) < 2023년 첨단전략산업 정책금융 공급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합 계
공급액	108,341	12,554	35,575	156,470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국가가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는 기금채를 발행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자금 지원의 효과성이나 재정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재정지원이나 현행 정책금융에 비해 가지는 장단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 정책금융기관 기금 신설 방식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비해 대규모 자금 지원이 가능한 반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은 적고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음. 또한, 정책금융과 달리 한국산업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⁴⁾ 등 은행의 건전성 비율 규제와 무관계⁵⁾ 추가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 다만, 정책금융기관 기금은 직접적으로 재정적자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국가보증채무를 증가시키고⁶⁾,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재정지원 사업과 달리 예산 당국이나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음.

□ 셋째, 유사기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해당 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⁷⁾ 법 개정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행위가 함께 추진되었

4)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건전성 규제 중 하나임.

5) 전략산업지원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29조제8항).

6) 정부가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는 기금채는 국가보증채무로서,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5회계연도의 국가보증채무 잔액기준으로 전망하고, 그 산출근거와 관리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고 있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가보증채무규모, '25년까지 10조원 이내로 안정적 관리, 2021.9.3.)

던 반면, 현재 전략산업지원기금채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제출되어 있지 않은 바, 전략산업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전략산업지원기금 신설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⁸⁾.

□ 넷째, 국가 보증 기금채를 발행하여 조성하는 유사기금인 기간산업 안정기금⁹⁾, 금융안정기금¹⁰⁾(이상 한국산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¹¹⁾(수출입은행) 등은 일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산업진흥 목적으로 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자금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7) 의안번호 제2024861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20년 4월 23일 발의
의안번호 제2024868호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2020년 4월 27일 제출

8)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조성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9) 현재 이 법에 근거하여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용하도록 함.

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금 및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도록 함(부칙 법률 제9741호, 2009.5.27.).

11) 최근 세계 각국에서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해 빈번한 수출 통제를 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기금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이하 생략)

위하여 여러 특례¹²⁾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정책금융기관에 설치된 유사 기금의 목적]

	금융안정기금	기간산업안정기금	공급망안정화기금	전략산업기금
근거법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한국산업은행법	공급망안정화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관리·운용주체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설치 목적	<u>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u> 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	<u>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u> 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u>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협 피해를 최소화</u>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주: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2023.12.26. 제정, 2024. 6. 27 시행 예정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재정 및 정책자금 지원 외에 한국산업은행 기금 신설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제도, 지원 방식의 효과성, 정부보증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 유사 기금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¹³⁾.

12) 개정안은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적용되는 특례(제42조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뿐 아니라, 국제 이자율 이하의 대출금리 적용(안 제29조의9제2항제1호가목) 등 새로운 특례를 신설하고 있음. 각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검토함.

13) 그 외에, 각 기금 신설 당시, 기획재정부가 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기금 조성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3. 주요 내용별 검토

가. 기금의 설치 근거 및 지원 대상

- 개정안은 전략산업기업에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략산업지원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대상인 전략산업기업을 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한 업종과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③ 이에 준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 명시함(안 제29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장의3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
<신 설>	제29조의7(전략산업지원기금의 설치) 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업종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인 “전략산업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17개 기술¹⁴⁾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 7의2]¹⁵⁾에서 명시한 62개의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등에 속하는 기업임.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 업종>

구분	지원 대상 업종
제2항 제1호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 국가첨단전략기술: 반도체(8), 디스플레이(4), 이차전지(3), 바이오(2) 분야 총 17개 기술
제2항 제2호	●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22), 이차전지(9), 백신(7), 디스플레이(5), 수소(6), 미래형이동수단(5), 바이오의약품(8) 분야 총 62개 기술

□ 개정안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을 보유하여 개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법령이 범위를 세부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상을 인용함으로써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지원 대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14) 【참고자료 2】 산업부 지정 국가첨단기술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기금의 재원

- 개정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재원을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전략산업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전략산업지원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관한 사항¹⁶⁾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9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8(전략산업지원기금의 재원) ① 전략산업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략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제2항제2호의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전략산업지원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9

16)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생 략)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제29조의9 제7항·제8항 및 제29조의10에서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략산업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29조의3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본다.

□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재원은 정책금융기관에 설치된 다른 기금과 대체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 다만,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사용 용도로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있는데(안 제29조의4제2항제4호의2 신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유사 기금과의 재원 비교]

전략산업지원기금 (한국산업은행법)	기간산업안정기금 (한국산업은행법)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안정화법)	금융안정기금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정부보증 기금채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	정부보증 기금채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정부보증 기금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정부보증 기금채 (금융안정기금채권)
기간산업안정기금 전입금	-	-	-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 회수자금 - 기금 운용수익 등	- 회수자금 - 기금 운용수익 등	- 회수자금 - 기금 운용수익 등	- 회수자금 - 기금 운용수익
-	-	-	- 금융기관 출연금 - 기업 등 출연금 - 산업은행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한 기금으로, ① 기간산업기업¹⁷⁾에 지원하는 자금과 부대비용, ②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등에 대한 출자·투자 등, ③ 차입금과 이자의 상환, ④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법 제29조의4제2항).

○ 개정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사용 용도로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기금 조성 및 자금 지원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¹⁸⁾.

○ 그러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전략산업지원기금에 전출하여 사용

17) 기간산업기업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속하는 기업임(제29조의4제2항). 현재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 9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음(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2).

18) 사실상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 발행’으로 조성될 것이나, 이와 같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명시한 것은 기금채를 발행하기 위해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전에 현재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조속한 기금 조성 및 지원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2024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를 받지 않아서, 실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 전략산업지원기금에 전입가능한 금액은 여유자금이며, 여유자금은 4,800억원 규모(한국산업은행 고유계정대에 예치하여 운용중)임. 【참고자료 1】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채권 발행) 및 자금 지원 실적 참조

다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략산업지원기금에 전출하는 것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에 대해 국회가 동의할 때에 정부가 제출한 자금사용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건전한 기금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¹⁹⁾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기금의 용도 등

□ 개정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을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과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에 대한 출자(의결권 행사 제한)·투자 등, 차입금 및 이자 상환,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기금 운용비용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국·공채 매입이나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전략산업지원기금과 한국산업은행의 다른 회계과의 구분 회계처리, 자금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9조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9(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전략산업지원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② 전략산업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19) 기간산업안정기금 전출로 인해 기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국가가 원리금 상환 부족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u>가. 자금의 대출.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 규모의 범위에서 대출 금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채 이자율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u> <u>나. 자산의 매수</u> <u>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u> <u>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u> <u>마. 사채의 인수</u> <u>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u> <u>사. 제2호의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u> 2. <u>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u> 3. <u>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u> 4. <u>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u> 5. <u>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비용</u> ③ <u>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u> 1. <u>국채·공채 등의 매입</u> 2. <u>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u> 3. <u>그 밖에 제29조의10에 따른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u> ④ <u>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u>

현행	개정안
	행이 운용하는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전략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산업은행과 전략산업기업지원목적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전략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자금 지원을 할 때에는 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⑧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의 사항에 대해 기간산업안정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전략산업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 규모의 범위에서 대출금리를 국채 이자율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유사기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자금대출시 대출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²⁰⁾ 기간산업안정기금 대

출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적었다고 보고²¹⁾,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략산업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자금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대출금리를 국채 이자율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상마찰 가능성과 국가채무 증가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한국산업은행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 WTO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²²⁾ 수출기업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또는 WTO 제소 등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유사 기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채 이자율 이하의 금리로 대출하는 경우, 조달자금 이자율²³⁾보다 대출이자율이 더 낮아져 전략산업기금채 상환시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국가보증채무 중 일부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음.

20) 기금 자금 지원 신청에 앞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설정하되, 최종적인 금리는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20.5.20자, 관계기간합동)

21) 【참고자료 1】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채권 발행) 및 자금 지원 실적 참조

22) WTO 보조금 협정상 3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 위반에 해당됨. 3대 요건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정부 뿐 아니라 산업은행 등 공적기관의 자금 공여, 대출, 보증 등), 경제적 혜택(시장 기준과 비교시 상업적 합리성 결여 등 민간기업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 특정성(특정 산업분야 및 기업만을 응수혜 대상으로 하거나, 사실상 다른 기업 내지 산업에 비해 지원실적에서 우대하는 것)임.

23) 이 경우, 전략산업기금채 발행 이자율

라. 보칙: 다른 법률의 적용 제외 및 특례

□ 개정안은 전략산업기금의 출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출자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 발행한도 예외 적용, 전략산업지원기금이 지명채권 양수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완화, 전략산업지원기금 자산 처분시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가계약법」 적용 제외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u>기간산업기업</u> 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u>제29조의4</u> 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 ----- <u>기간산업기업</u> 및 <u>제29조의9</u> 에 따라 출자한 <u>전략산업기업</u> -----, ---- ----- <u>제29조의4</u> 또는 <u>제29조의9</u> ----- ----- -----.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u>제3장의2</u> 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 ----- ----- <u>제3장의2</u> 또는 <u>제3장의3</u> ----- ----- ----- ----- -----

현행	개정안
을 면제한다.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u>경우</u>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u>기간산업기업</u>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u>처분하는</u>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	-----.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 ----- -----<u>경우 또는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u>----- ----- -----. ② 제3장의2 또는 제3장의3----- -----<u>기간산업기업 또는 전략산업기업</u>----- ----- ----- -----. ③ -----제3장의2 또는 제3장의3----- -----제3장의2 또는 제3장의3----- -----<u>처분하거나 전략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전략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u>----- ----- -----

현행	개정안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각 조항은 현행법에 따라 유사 기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전략산업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이며²⁴⁾,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는 아래 표와 같음.

[보칙 중 특례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조문	내용	내용 및 취지
제40조	자금지원 기업에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배제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출자로 자금지원을 받은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법적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
제41조	적극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경향 불식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코로나19)에서 적극적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됨.
제42조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의결권 배제 및 제한주식 발행한도 예외인정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법」 및 「자본시장법」 규정 ²⁵⁾ 에 대한 특례 규정 -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은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경영권을 그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데,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이 많아지면 의결권을 가진 소수의 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어 「상법」 등에서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 특례 규정은 기금이 지원기업에 출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2항) 지명채권 양도 대항요건 완화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민법」 규정 ²⁶⁾ 에 대한 특례 규정 - 지명채권 양수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명채권 양수 방식의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

24) 다양한 자금지원 방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간섭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조문	내 용	내용 및 취지
	(제3항) 자금지원 기업 자산처분시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가계약법」 적용 배제	산업은행이 자금지원에 따라 보유하게 된 채권, 주식 등의 매각 또는 전략산업기업 자산의 위탁매각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적기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속한 처분 절차를 통해 적기에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조속한 민영화를 도모

□ 이 중 산업은행이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게 된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략산업기업 자산을 위탁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안 제42조제3항)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등을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산 등의 신속한 처분을 통해 적기에 민영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위기대응 목적의 기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속한 처분을 위해 특례를 규정할 필요성이 유사기금에 비해 적고, 「국가계약법」 등 적용 배제로 인해 자산 등 처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5) 「상법」 제344조의3제2항에 따라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라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로 그 한도가 완화되어 있음.

2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양도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함.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마. 부칙: 기금의 운용 기간 등

-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 기간을 기금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 기간)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 개정안 부칙의 각 조문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수정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있으나, 전략산업기업의 업종(안 제29조의7제2항), 국채 이자율 이하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규모(제29조의9제2항제1호가목후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위해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유사기금의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²⁷⁾,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성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임²⁸⁾.

< 유사 기금의 조성·운용 기간 >

기금명	조성 또는 운용기간
전략산업지원기금	2028.12.31.까지(약 5년) 운용
기간산업안정기금	2025.12.31.까지(약 5년) 운용
공급망안정화기금	법 시행일(2024.6.27.)부터 5년간 조성
금융안정기금	금융기관 및 기관의 출연금 및 기금채 발행 조항은 2014.12.31.까지 유효(조성)

-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산업지원기금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만 지원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격상 수반되는 대규모 설비 확충, 핵심 기술 R&D 투자 등의 자금회수 기간 등을 감안할 때 5년의 운용기간이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7)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부 칙 <법률 제17253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28) 한국산업은행법 검토보고, 2020.4,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용복

□ 셋째, 개정안 부칙은 기금의 운용기간을 둔 반면, 운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기금청산과 관련하여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기금 청산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²⁹⁾.

○ 즉, 기금의 효율적인 청산을 위하여 운용기간이 도래한 이후 존재하는 기금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 채권보증을 통해 위험을 부담하는 국가가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방식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29)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공급망안정화법)과 기간산업안정기금(한국산업은행법)은 기금청산 관련 규정이 없음.

<정부보증채권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청산 관련 부칙 입법례>

기금명	법률명	조성 또는 운용기간
부실채권 정리기금	자산관리 공사법	부칙<법률 제5371호, 19997.8.22.>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⑤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 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u>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 다만,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u>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u>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금보호 기금채권 상환기금	예금자 보호법	부칙 <법률 제6807호, 2002.12.26.>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u>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 까지 청산</u>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u>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u>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u>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u>

【참고자료 1】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채권 발행) 및 자금 지원 실적

□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채권 발행) 내역: 13건, 1조 2,300억원

구분	발행금액(만기)	발행일자
1차	2,400억원 (3.5년)	'20.10.21
2차	1,900억원 (5개월)	'20.11.13
3차 4차	300억원 (3년) 600억원 (5년)	'20.12.18
'20년	5,200억원	
5차	500억원 (6개월)	'21. 1.19
6차	200억원 (3개월)	'21. 3.24
7차	1,900억원 (6개월)	'21. 4.13
8차	300억원 (6개월)	'21. 6. 1
9차	500억원 (6개월)	'21. 7.19
10차	1,900억원 (1년3개월)	'21.10. 8
11차	300억원 (2년3개월)	'21.12. 1
12차 13차	1,200억원 (3년6개월) 300억원 (4년)	'21.12.15
'21년	7,100억원	
전 체	12,300억원 (잔액 4,800억원)	-

주: '23년 말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 지원 실적: 총 7,633억원¹⁾ 지원 (~'23년말)

(단위 : 억원)

구분		기간산업 기업 대출·투자	협력업체 프로그램 출자	합계
실적	2020년	3,321	1,857	5,178
	2021년	1,500	955	2,455
	2022년	-	-	-
예상	2023년	-	-	-
합계		4,821	2,812 ²⁾	7,633

주 1.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실적 기준시 8,052억원(4,821억원 + 3,231억원)

2. 협력업체 총 대출금액(공급실적)은 3,231억원이나, SPV의 대출채권 양수(약 90%)를 위해 기안기금에서 SPV 앞으로 2,812억원을 출자

자료: 한국산업은행

【참고자료 2】 산업부 지정 국가첨단기술

□ 총 17개 기술을 지정(▲반도체 8, ▲디스플레이 4, ▲이차전지 3, ▲바이오 2)

【산업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

분 야	기술명
반도체 (8개)	•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픽셀 0.8 μ m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 기술
	• 14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에 해당되는 FO-WLP, FO-PLP, FO-PoP, SiP 등 공정·조립·검사기술
디스플레이 (4개)	•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3,000ppi 이상의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 (모듈 공정 기술은 제외)
	• 반치폭 40nm 이하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색재현율 REC2020기준 90% 이상, LCD와 모듈기술은 제외)
	• 크기 30 μ m 이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초대형 칩크기 30 μ m 이하, 모바일 칩크기 20 μ m 이하, 초소형 칩크기 5 μ m 이하)
	• 크기 1 μ m 이하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모듈기술은 제외)
이차전지 (3개)	•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
	• 리튬이차전지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니켈함량 80% 초과)
	•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래파이트 복합음극, 황 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바이오 (2개)	•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다회용 바이옱터랙터 세포배양: 1만리터 이상)
	•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자가 및 동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배양 규모: 100 dose/lot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목적 세포 구성률: 80%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생존율: 80% 이상)

문 의 처

02)6788-5104